

오산시의회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31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

일부개정규칙안

[장인수 의원 대표발의]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”로 변경함(안 제1조).
- 나.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중 위원수를 “5인 이내”에서 “6인 이내”로 조정함(안 제2조제1항).

3. 규칙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2년 1월 6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자치법규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규칙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(장인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8-630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년 12월 30일

발의의원 : 장인수, 김영희, 김명철, 이상복,
성길용, 이성혁, 한은경 의원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57조”를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”로 변경함(안 제1조).
- 나.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중 위원수를 “5인 이내”에서 “6인 이내”로 조정함(안 제2조제1항).

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7조”를 “제65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5인”을 “6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위원장과 부위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7조 및 「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 따라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한 <u>5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.</p> <p>② <u>위원장</u>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<u>간사</u>가 대행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65</u> <u>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6인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위원장과 부위원장</u>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<u>부위</u> <u>원장이</u> -----.</p>

관계법령발췌서

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2.1.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1.12., 전부개정]

- 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